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7. 20 선고 2020나240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# 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7. 20 선고 2020나2404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동두천시법원 2020. 8. 20 선고 2020가소1103 판결

#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1. 6. 22.

판결선고 2021. 7. 20.

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20. 8. 20. 선고 2020가소1103 판결

#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황현찬, 판사 이효두, 판사 박이규